

광주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나679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나6793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단53857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현, 최정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단비

변론종결 2022. 5. 13.

판결선고 2022. 6. 10.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단53857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9. 4. 10.자 7,000,000원, 2019. 6. 7.자 1,000,000원, 2019. 10. 10.자 13,62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2. 3. 23. D 합명회사에 2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C은 2억 6,500만 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D 합명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위 채권을 양수한 후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809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5. 26. ‘C은 D 합명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642,087원 및 그중 72,412,699원에 대하여 2016.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7. 14. 확정되었다.

다. C은 2019. 4. 10. 딸인 피고 명의의 E은행 계좌로 7,000,000원, 2019. 6. 7. 같은 계좌로 1,000,000원, 2019. 10. 10. 같은 계좌로 13,62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채무자인 C을 상대로 양수금채권 내지 판결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증여계약의 유무

원고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른 용도로 받은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① C과 피고가 부녀 관계인 점, ② C이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 원인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는 2019. 4. 10.자 700만 원 송금에 관하여 C의 F에 대한 31,484,580원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 자신의 돈 1,600만 원을 더하여 2,300만 원을 F에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만 변제하게 된 경위에 관한 설명이 없고, C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라면 피고가 먼저 C에게 송금하고 C이 F에 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오히려 C이 피고에게 송금하게 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2019. 6. 7.자 100만 원 송금에 관하여 앞서 C에게 대여한 1,6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1,6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⑤ 피고는 2019. 10. 10.자 1,362만 원 송금에 관하여는 최종적으로 F 내지 주식회사 G에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이 F나 G에 금전을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 원인의 존재에 관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고, 이후 피고의 송금행위는 피고와 별개의 법인격인 F나 G 사이의 문제일 뿐이어서 여전히 C으로서의 법률상 원인 없이 무상으로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과 피고 사이에 증여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다. C의 무자력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9년경 C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전혀 없는 사실, 같은 무렵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107,448,453원의 판결금채무(2019. 4. 10. 기준1))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은 없고 소극재산만 존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마.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C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1,620,000원(= 7,000,000원 + 1,000,000원 + 13,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채승원, 판사 유현주, 판사 신호승

1) = 78,642,087원 + 28,806,366원(72,412,699원에 대하여 2016. 8. 16.부터 2019. 4.

10.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